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심결사례

1999. 1. 5.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p>(사)한국휴게산업중앙회 전남지회 순천시지부의 경쟁제한행위 (9811광사1878)</p>	<p>(사)한국휴게산업중앙회 전남지회 순천시지부는 '97년 11월 외환위기 이후 환율인상으로 인해 수입비중이 높은 커피와 국산차 등의 원료 및 부대물품의 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커피 및 녹차의 가격인상요인이 발생하자 자신의 구성사업자인 회원업소들이 계속적으로 차값 인상을 요구하자 '98.5.11. 등 세 차례에 걸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98.8.1.부터 커피 및 녹차의 가격을 종전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순천시지역 대부분의 회원업소는 '97.8.1.부터 87.까지의 기간 중 차값을 인상하였으며, 차값 인상 이후 전남도청과 순천시청의 협조요청 및 시민단체 등의 압력에 의해 차값을 '98.9.15.부터 종전 가격인 1,300원으로 인하하기로 결정하고 '98.9.14. 동 결정사항을 각 회원업소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자신의 구성사업자인 회원업소들은 자신과는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로서 각자의 경영여건 등을 감안하여 자신이 판매하는 차값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회원업소가 판매하는 차의 판매가격을 인상 또는 인하하도록 결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각 회원업소의 자율적인 가격결정권을 제한하는 등 순천시지역 휴게음식점 분야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6조제1항제1호 위반</p>	<p>◎ 경쟁제한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광주·전남지역에서 발행되는 1개 지방일간지(전판)에 3단×10cm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p>
<p>(주)석현유통의 가맹산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 행위 (9809유거1551)</p>	<p>(주)석현유통은 「라면요리」라는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가맹산업은 본질적으로 가맹사업자의 경영전략이나 영업방법 등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특성에 의해 가맹사업에서는 가맹희망자들이 가맹사업에의 가입 여부를 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당해 가맹사업자의 경영실적, 경영방침, 영업내용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공유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가맹계약의 체결시 가맹희망자의 서면요구에 따라 필요정보를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맹희망자가 이미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맹사업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서면으로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불응하는 등 가맹산업에 있어서의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4호 위반</p>	<p>◎ 가맹산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자신의 사업장 정문 등 가맹희망자가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전지크기(78.8cm×109cm)의 공표문으로 7일간 게시하여 공표토록 함</p>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p>학교법인 건국대학교의 부당한 광고행위 (9811광고1953)</p>	<p>학교법인 건국대학교는 '97.8.4 동아일보를 통하여 사회교육원생 모집광고를 함에 있어서 "쥬얼리 디자인 과정 1년 수료자에게는 미국 소재 보석학교인 GIA 수료증이 수여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함으로써 전문 보석 디자이너 양성을 목적으로 개설된 쥬얼리 디자인 과정의 교육 이수자에게 실제로는 미국 소재 보석학교인 GIA 수료증을 수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이수자가 영업이나 취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동 수료증이 수여되는 것처럼 허위의 광고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6호 위반</p>	<p>◎ 부당한 광고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이미 광고한 1개 중앙일간지(전판)에 3단×10cm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p>

1999. 1. 6.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p>광주광역시 동구지역 3개 액화석유가스판매업소의 부당한 공동행위 (9808광사1376) ((유)합동에너지, (유)산장에너지, (유)충장에너지)</p>	<p>(유)합동에너지 등 광주광역시 동구지역 3개 액화석유가스판매업소는 '95.6.29. 광주광역시 동구 산소동에 소재한 구 산장가스 사무실에서 개별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구 충장가스 대표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화법인 설립을 위한 모임을 갖고 '95.9.29. 3개 공동화법인을 설립하여 '95.11.1.부터 액화석유가스 판매영업을 3개 공동화법인 공동으로 수행할 것과 상호 가격경쟁을 하지 않기 위해 액화석유가스 중 프로판가스는 산업자원부가 고시한 판매가격의 상한가격인 고시가격을, 부탄가스는 시중가격으로 판매할 것을 합의하고 동 합의사항을 공동영업 개시일인 '95.11.1.부터 해체일인 '98.9.1.까지 사실상 유지했으며, 영업의 공동수행 및 관리에 관한 합의사항에 따라 공동영업 기간 중에 (유)합동에너지 내에 액화석유가스 판매 및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기 위한 공동사무실을 설치하고 액화석유가스 판매대금을 통합 관리하면서 직원들의 인건비 등을 포함한 제반 경비를 공제하고 남은 이익을 매월 결산총회를 통해 각사의 출자자 수를 기준으로 한 이익금배분비율원칙(합동에너지 : 35.04%, 산장에너지 : 32.48%, 충장에너지 : 32.48%)에 따라 배분하는 등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거나 액화석유가스의 판매영업의 주요 부문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는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통해 광주광역시 동구지역 액화석유가스 판매업 분야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7호 위반</p>	<p>◎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연명으로 광주광역시 지역에서 발행되는 1개 지방일간지(전판)에 3단×10cm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p> <p>◎ 과징금 납부(단위: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합동에너지 : 13,000 · (유)산장에너지 : 11,000 · (유)충장에너지 : 12,200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p>한화에너지프라자(주)의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 (9809경축1450)</p>	<p>한화에너지프라자(주)는 '96.8.30.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대전광역시 중구에 소재한 대산유조(주)의 주식 5,000주(액면금액 2500만원)를 대산유조(주)에게 매각하기로 결정한 후 '97년 1월부터 '97년 5월까지의 기간 중에 5회에 걸쳐 매월 500만원씩 총 2,500만원을 대산유조(주)에게 지급해야 할 운송용역비에서 주식매각대금과 상계하여 처리하는 방법을 통하여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거래상대방의 주식을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매입하도록 요구하면서 자신이 지급하여야 할 운송용역대금에서 동 주식대금을 공제하는 등 자신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4호 위반</p>	<p>◎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1개 중앙일간지(전판)에 4단×15cm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p>
<p>(주)신세계백화점(E-마트)의 대규모소매점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등 (9809유거1582)</p>	<p>(주)신세계백화점은 대형할인점인 E-마트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납품가격은 유통경로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98년 8월 초순경에 경쟁업체인 한국마크로(주)의 전단에 게재된 삼색텔레카드, 펍시콜라 등의 상품가격이 자신에게 납품되는 동일 또는 유사상품의 가격과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형할인점이라는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98.8.12.부터 8.25.까지의 기간 중 자신과 계속적으로 직매입거래를 하고 있던 11개 제조·납품업체에 대해 납품가격의 인하를 요구하고 펍시콜라 등 12개 품목에 대해 당초 납품가격보다 65% 내지 256% 인하된 가격으로 납품을 받았으며, '98.7.1.부터 8.25.까지의 기간 중 매일유업 등 4개 납품업체와 직매입거래 계약기간 중 동 납품업체로부터 받을 판매장려금¹⁾을 1~2% 인상하거나 신규 적용하기로 합의한 후 이를 합의한 시점보다 1개월 소급하여 적용하여 동 납품업체의 납품대금에서 3,120천원을 부당하게 감액하였으며, '98.6.27. 청주점을 개장하면서 개점일로부터 '98.7.5.까지의 기간 중 LG죽염치약 및 오데뜨화장품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현상경품행사를 개최하여 적법한 거래한도인 8만원을 56천원에서 1,700천원까지 초과한 LG청소기 및 LG에어콘 등의 소비자현상경품류를 제공하는 등의 부당한 경품류제공행위를 하는 등 대규모소매점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위반</p>	<p>◎ 거래상지위남용행위 등 대규모소매점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1개 중앙일간지(전판)에 3단×10cm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p> <p>◎ 과징금 납부 · 156,200</p>

1) 상품을 공급하는 납품업자가 자기 상품의 판매신장을 도모하기 위해 대규모소매점업자 등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p>한국마크로(주)의 대규모 소매점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9809유거1583)</p>	<p>한국마크로(주)는 (주)아모스 등 5개 업체와 각각 1년 단위로 직매입 납품거래를 체결하고 계약만료일 1개월 전에 해지통보가 없는 경우 자동적으로 1년씩 연장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약정상 거래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납품업자와 품목이 중복되거나 반품거부 등의 이유로 '98년 6월부터 7월까지의 기간 중에 기존 재고를 반품한 후 상품을 납품받지 않는 방법으로 대형할인점으로서의 자신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과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거래상대방과의 거래과정에서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약정상 합의된 최소한의 최고기간도 부여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였으며, '98.7.14.부터 7.31.까지의 기간 중 대창특수지 등 71개 납품업자들로부터 직매입의 형식으로 매입한 169백만원 상당의 상품을 납품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재고과다, 판매부진, 저회전, 시준경과 및 취급중단 등의 사유로 당해 상품을 반품하였으며, 강남음향 등 7개 납품업체들로부터 필립스 카세트 등 직매입한 납품대금 15,758천원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매장에서 판매하던 동 상품의 판매가격이 인하되었다는 이유로 '98.7.13.부터 7.28.까지의 기간 중 동 재고품을 서류상 반품한 후 가격을 인하하여 재매입하는 방법을 통해 차액인 3,754천원을 당초 납품대금에서 공제하고 각각 지급하였으며, (주)코렉스의 싸이클론 자전거를 판촉행사기간인 '98.9.9.부터 9.21.까지의 기간 중 상품성의 저하나 제조 또는 구입원가의 인하 등 정당한 이유없이 자신의 매입원가보다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경쟁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염매행위를 하였으며, 이미 단종된 상품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지 못한 채 '98년 8월 각 매장별 행사계획을 홍보하는 마크로메일 전단을 통해 40만명의 회원에게 쿠폰을 발행하고 '98.8.12.부터 8.25.까지의 기간 중 쿠폰소지자에게 대우TV를 시중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1인 1대씩 한정·판매한다고 표시·광고한 후 쿠폰을 제시하고 구매를 신청한 고객 1,060명에게 물량부족을 이유로 동 상품을 판매하지 않았으며, 풍국농산의 "사천특미"에 대해 동 상품은 '97년산으로서 햅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햅쌀"이라고 광고하는 방법으로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p>	<p>◎ 대규모소매점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1개 중앙일간지(전판)에 4단×15cm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p> <p>◎ 과징금 납부 · 195,800천원</p>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p>한국까르푸(주)의 대규모 소매점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할인특별판매행위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9809유거1584)</p>	<p>는 허위·과장 광고행위를 하는 등 대규모소매점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1호, 3호, 4호 및 제6호 위반</p> <p>한국까르푸(주)는 대형할인점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들로부터 인지도가 높은 대형할인점으로서의 자신의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98년 2월부터 '98년 7월까지의 기간 중에 자신과 직매입거래에 있는 유성알앤디 등 9개 납품업자들로부터 매입한 양말 등 직매입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품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판매중 파손 등의 이유로 부당하게 당해 납품업자에게 반품하였으며, '98.8.20.부터 8.30.까지의 기간 중 광고전단을 통하여 자신이 취급하는 상품을 광고함에 있어서 실제로는 할인특매가 실시되지 않는 '경기특미' 등 일부상품에 대하여 "특매가격"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이를 할인특매로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부당하게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신과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하는 등 대규모소매점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할인특별판매행위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위반</p>	<p>◎ 대규모소매점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할인특별판매행위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3개 중앙일간지(전판)에 4단×18.5cm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p> <p>◎ 과징금 납부 · 8,670만원</p>
<p>(주)코스트코리아의 대규모소매점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등 (9809유거1585)</p>	<p>(주)코스트코리아는 대형할인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인지도가 높은 대형할인점이라는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과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던 증산전자 등 11개 납품업체와 삼성TV, 캐논카메라 등의 상품에 대해 직매입거래를 하면서 기매입한 상품의 판매가격이 인하되었다는 이유로 재고상품을 '98.5.25.부터 8.13.까지의 기간 중 반품 처리한 후 인화된 납품단가로 재매입함으로써 11개사의 13개 품목의 상품에 대한 판매잔량의 반품과 재매입으로 인한 차액인 97,269천원 상당을 납품대금에서 부당하게 감액하였으며, '98.5.22.부터 8.28.까지의 기간 중 미도 인터내셔널 등 3개 업체로부터 직매입한 대방석 등의 상품 중 일부 물량에 대하여 타 상품과의 중복, 본사 바이어의 철수 요청 및 판매부진 등 정당한 반품사유가 아닌 사유를 들어 부당하게 반품하는 등 자신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규모소매점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4호 위반</p>	<p>◎ 대규모소매점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1개 중앙일간지(전판)에 3단×10cm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p> <p>◎ 과징금 납부 · 83,700천원</p>
<p>(주)LG상사의 대규모소매점업에 있어서의 불공</p>	<p>(주)LG상사는 정화식품(주) 등 11개 납품업자와 직매입거래를 함에 있어서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구입한</p>	<p>◎ 대규모소매점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하</p>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정거래행위 (9809유거1586)	후에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총 21백만원을 당해상품의 대금에서 부당하게 공제하여 지급하는 등 소비자에게 인지도가 높은 대형할인점이라는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대규모소매점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4호 위반	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1개 중앙일간지(전판)에 3단×10cm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
그랜드산업개발(주)의 대규모소매점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9809유거1587)	그랜드산업개발(주)는 자신이 운영하는 대형할인점인 그랜드마트 화곡점에서 '98년 1월부터 8월까지의 기간 중 이루어진 직매입거래 중 금강스포츠 등 3개 납품업자들로부터 납품받은 롤러브레이드 등 8개 품목에 대하여 대형할인점이라는 자신의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대규모소매점 고시에서 규정된 정당한 반품사유가 아닌 사이즈 미구비, 계절상품, 일부 제품의 하자 등의 사유를 들어 당해 상품을 전량 반품하는 등 대규모소매점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4호 위반	◎ 대규모소매점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자신의 그랜드마트 화곡점 정문 등 고객의 출입이 빈번한 곳에 전지크기(78.8cm×108cm)의 공표문으로 7일간 공표토록 함
광주광역시 북구지역 5개 액화석유가스판매업소의 부당한 공동행위 (9808광사1379) (주)진성에너지, (주)그린에너지, (주)라영에너지, (주)한얼에너지, (주)홍양에너지)	(주)진성에너지 등 광주광역시 북구지역 5개 액화석유가스판매업소는 '97년 11월 중 각각 공동화합인을 설립한 후 '97.12.10. (주)진성에너지 사무실에서 개별 영업을 하고 있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자 및 각사 주주 등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임을 갖고 '98.1.1.부터 액화석유가스 판매영업을 공동으로 수행할 것과 업체 상호간에 가격경쟁을 하지 않기 위해 액화석유가스 중 프로판가스는 산업자원부가 고시하는 판매가격의 상한선인 고시가격으로, 부탄가스는 시중가격으로 판매할 것을 합의하고, 동 합의사항을 공동영업 개시일인 '98.1.1.부터 '98.6.30.까지 유지하였으며, 동 기간 중 영업을 공동수행 및 관리에 관한 합의원칙에 따라 (주)진성에너지 내에 액화석유가스의 판매 및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기 위한 공동사무실을 설치하고, 액화석유가스 판매대금을 통합 관리하면서 직원 인건비 등을 포함한 제반 경비를 공제하고 남은 이익금을 매월 15일 결산총회를 거쳐 각사 지분비율원칙(진성에너지 : 20.79%, 그린에너지 : 20.59%, 라영에너지 : 19.80%, 한얼에너지 : 19.02%, 홍양에너지 : 19.80%)에 따라 배분하는 등 광주광역시 남구지역의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거나 액화석유가스 판매영업의 주요 부문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는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7호 위반	◎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연명으로 광주광역시 지역에서 발행되는 1개 지방일간지(전판)에 3단×10cm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 ◎ 과징금 납부(단위:천원) · (주)진성에너지 : 4,700 · (주)그린에너지 : 3,500 · (주)라영에너지 : 4,300 · (주)한얼에너지 : 4,400 · (주)홍양에너지 : 2,800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p>광주광역시 서구지역 2개 액화석유가스판매업소의 부당한 공동행위 (9808광사1377) ((유)서부에너지, (유)매일에너지)</p>	<p>(유)서부에너지 등 광주광역시 서구지역 2개 액화석유가스판매업소는 각각 공동화법인을 설립한 후 '97.4.10. 법인 대표이사 등 3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임을 갖고, '97.7.1.부터 액화석유가스 판매영업을 공동으로 수행할 것과 업체 상호간에 가격경쟁을 하지 않기 위해 액화석유가스 중 프로판가스는 산업자원부가 고시하는 판매가격의 상한선인 고시가격으로, 부탄가스는 시중가격으로 판매할 것을 합의하고, 동 합의사항을 공동영업 개시일인 '97.7.1.부터 '98.8.31.까지 유지하였으며, 동 기간 중 영업의 공동수행 및 관리에 관한 합의원칙에 따라 (유)서부에너지 내에 액화석유가스의 판매 및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기 위한 공동사무실을 설치하고, 5개 영업소(서부에너지 3개, 매일에너지 2개)를 통해 일반수요자에게 판매한 액화석유가스 판매수익금을 통합 관리하면서 직원 인건비 등을 포함한 제반 경비를 공제하고 남은 이익금을 매월 10일 결산총회를 거쳐 각사 출자좌수를 기준으로 한 이익금 배분비율원칙(서부에너지 : 58%, 매일에너지 : 42%)에 따라 배분하는 등 광주광역시 서구지역의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거나 액화석유가스 판매영업의 주요 부문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는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7호 위반</p>	<p>◎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연명으로 광주광역시 지역에서 발행되는 1개 지방일간지(전판)에 3단×10cm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p> <p>◎ 과징금 납부(단위: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서부에너지 : 5,900 · (유)매일에너지 : 2,600

1999. 1. 7.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p>라미화장품(주)의 차별적 취급행위 (9809경축1449)</p>	<p>라미화장품(주)는 '97년 자신의 신규 특약점인 경우 담보 1억원 이상인 A등급은 매입액 3억원의 한도 내에서, 담보 7천만원 이상인 B등급은 2억원의 한도 내에서 매입액의 10%에 해당하는 보너스를 각각 6~10개월의 기간에 걸쳐 분할 지원하였으며, 특히 '97년에 개설된 자신의 전직 직원의 특약점에 대해서는 상기 지원 외에 “직원 특별지원 덤 지급”이라는 정책을 신설하여 매입액 3억원의 한도 내에서 5년 이상 근무자는 5%, 10년 이상 근무자는 10%에 해당하는 보너스를 추가적으로 분할하여 지원하는 등 전직 직원의 신규 특약점이라는 등의 이유로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수량·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한 취급을 하는 차별적 취급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1호 위반</p>	<p>◎ 차별적 취급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자신의 모든 특약점에 서면으로 통지토록 함</p>

1999. 1. 25.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p>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9811독관1996)</p>	<p>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는 서울특별시 지하철 1호 내지 4호선을 독점적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자신의 거래상 대방인 이동통신사업자 및 한국전파기독교관리(주)에게 자신의 지하철 시설물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매년 계약 갱신시에 물가 상승시에는 물가 상승율을 적용하여 지하철시설물 사용료를 조정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물가 하락시에는 지하철시설물 사용료를 조정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으며, 이동통신사업자의 통신시설에 의한 피해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협의과정을 배제한 채 자신이 일방적으로 피해보상액을 산정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는 등 자신의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4호 위반</p>	<p>◎ 거래상지위남용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자신과 「지하철시설물 사용계약」을 체결한 모든 이동통신사업자 및 한국전파기독교관리(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토록 함</p>

1999. 1. 27.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p>정읍시현상소협회의회의 경쟁제한행위 (9809광사1516)</p>	<p>정읍시현상소협회의는 자신의 구성사업자는 자신과는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로서 각자의 영업능력과 경영여건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서비스의 가격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98년 1월경 전라북도 정읍지역에서 사진현상 및 인화업을 운영하는 자신의 12개 구성사업자 중 7~8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진의 현상 및 인화료에 대한 논의를 한 후 현상료는 롤당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인화료는 장당 150원에서 200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하고 '98년 1월말부터 자신의 구성사업자들에게 인상된 사진의 현상 및 인화 가격표를 배부하고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98.2.1.부터 현상 및 인화료를 동 가격대로 준수하여 받도록 하는 등 전라북도 정읍지역에서의 사진현상 및 인화업 분야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6조제1항제1호 위반</p>	<p>◎ 경쟁제한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자신의 모든 구성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토록 함</p>
<p>보성시계판매(주)의 부당한 경품류제공행위 (9810유거1626)</p>	<p>보성시계판매(주)는 (주)로만손과 “총판공급계약서”를 체결하고 로만손시계를 판매하면서 자신이 공급하는 상품의 거래에 부수하여 모든 구입자에게 경품류를 제공하는 소비자경품류제공의 경우 적법한 소비자경품류의 가액한도는 거래가액의 10% 이하이며, 최고 10만원까지만 제공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98.5.15.부</p>	<p>◎ 부당한 경품류제공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주)나산유통 광명점 정문 등 고객</p>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p>터 11.15.까지의 기간 중 로만손시계를 구입한 모든 고객들에게 (주)웨딩라인이 협찬하는 신랑·신부화장, 턱시도·드레스 대여, 가족사진촬영을 할 수 있는 1년 유효기간의 상품권 등 15만원 내지 60만원에 해당하는 경품을 제공하는 등 적절한 거래가액을 5만원 내지 50만원을 초과하여 제공하는 등 부당한 경품류제공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3호 위반</p>	<p>의 출입이 빈번한 곳에 전지크기(78.8cm×109cm)의 공표문으로 게시하여 공표토록 함</p>

1999. 2. 2.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p>대한손해보험협회의 구성사업자에 대한 사업활동제한행위 (9810공동1817)</p>	<p>대한손해보험협회는 손해보험회사들이 보험질서유지를 위해 제정한 「공정경쟁질서유지에관한상호협정」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98.9.24. 보험모집질서개선 제2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비전속대리점인 (주)한맥인스코가 '97.12.24. 등 3차례에 걸쳐 한겨레신문 등을 통해 자동차보험가입자에게 엔진오일할인권, 경정비할인권 등의 특별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약속행위를 함에 따라 비전속대리점이 동 상호협정 제3조(금지사항)에 위반하여 보험모집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동 상호협정 제채처리기준 및 '적용상의유의사항' 4의 후단규정에 따라 특별이익제공약속행위에 따라 모집된 보험을 인수한 손해보험회사에 대해서만 제재금을 부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별이익제공약속행위로 인한 보험의 인수 여부와 관계없이 동 약속행위 자체만으로 (주)한맥인스코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11개 구성사업자 모두에게 '98년 1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 중의 전체 보험계약 실적을 기준으로 제재금을 부과하는 등 특별이익제공약속과 무관한 손해보험회사들의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6조제1항제3호 위반</p>	<p>◎ 구성사업자에 대한 사업활동제한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자신의 모든 구성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토록 함</p>